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의 내용을 정하면서 유족에 대한 지원 대상에 위로금을 삭제하고, 이식 대상 장기등에 손 및 팔, 말초혈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8872호, 2018. 5. 8. 공포, 2018. 8. 9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기관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,

장기등기증자가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보건복지부 제공>

●고용노동부령 제218호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8년 5월 8일

고용노동부장관 인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3항 본문 중 “주민등록표 등본”을 “주민등록표 초본”으로 한다.

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주민등록표 등본”을 “영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(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“근로자”라 한다)의 주민등록표 초본”으로, “신청인이”를 “근로자가”로 한다.

제83조제6항 후단 중 “주민등록표 등본”을 “주민등록표 초본”으로 한다.

제89조제1항 후단 중 “주민등록표 등본”을 “주민등록표 초본”으로, “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”를 “이를 첨부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앞쪽 중 “(백상지80g/m²)”를 “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제1쪽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담당 직원 확인 사항	주민등록표 초본
----------------	----------

별지 제46호서식 앞쪽 ⑦란 중 “지역근로자”를 “지역고용근로자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(일반용지60g/m²)”을 “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”로 하며,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지역고용근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별지 제79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(일반용지60g/m²)”를 “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”로 한다.
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주민등록표 초본 (수습자격증 기재사항 변경·정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
-----------------	--

별지 제84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주민등록표 초본
-----------------	----------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수집하던 것을,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취지에 맞추어, 고용보험 업무에 필요한 1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수집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한편,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<고용노동부 제공>

●고용노동부령 제219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8년 5월 8일

고용노동부장관 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(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)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사업자등록증
2. 주민등록표 초본(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. 다만,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.
3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(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)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